

제14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07. 11. 15(목)

# 조례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종진]

## 【 목 차 】

1. 거창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2.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의안번호 제2007 - 41호>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6일
- 나. 제 출 자 : 거창군수(경제과)
-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6일

## II. 제안이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온 농공단지 업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근거법규를 개정하고,
- 농공단지 입주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외시키며,
- 특히, 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농공단지특별회계와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

## III. 주요내용

- 제명을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조례”로 변경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금고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안 부칙)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VI.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8조, 제29조, 제4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3조
- 「지방재정법」 제9조, 제94조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2) 입법예고(2007. 10. 9 ~ 10. 29)결과 : 의견 없음

#### IV.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업무가 2002. 12. 30.부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조례제정 근거법규를 바꾸고 조례내용을 근거법규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또한 2007. 7월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거창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설치가 필요하여 조례안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먼저, 조례제명을 “거창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로 바꾸는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산업단지의 범위 안에 농공단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2) 안 제1조(목적)는 조례제정의 근거법규를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이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현행조례 내용을 일부수정보완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안 제4조(세출)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정하면서 제1호에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경비에만 지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단지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세출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으므로, 제4조 제1호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제1호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4조(세출)	제4조(세출)
①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①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단지조성비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의 지출 및 그 밖의 부대경비
②~③ (생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4) 또한, 현행 조례 제8조(융자 및 보조)가 삭제된 것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2004. 10. 산업자원부,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관 계 법 령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28조 (비용의 부담)**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과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시설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등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지원방법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5.12.29>

**제46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5.12.29, 1999.2.8, 2002.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침 중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안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2002.12.30>

## □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8조(산업용지 등의 매각 및 임대가격) ①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산업시설용지의 매각가격은 자체 조성한 용지의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 동령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외부로부터 취득한 용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제세공과금,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및 유지보수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지원시설용지 및 기타용지의 매각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용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기타용의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 감정액으로 한다. 다만,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한다.

3. 공장 기타시설의 매각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시가감정액 또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금액으로 한다.

4. 산업용지의 임대가격(1년기준)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0분의 10 이하를 곱한 금액으로, 공장 기타시설의 임대가격(1년기준)의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납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당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임대가격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산정기준은 법 제36조 제1항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임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단지 등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은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양수 등으로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단지 등의 지정해제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농공단지 조성비중 국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예산지원 요령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장·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요구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지방비 용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확보 내시된 국비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기채할 수 없다.
3. 시·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3. 시·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별지 1의 서식에 의하여 소요자금 배정 요청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국비·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서 등의 형태 및 제출관련 세부사항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군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 및 산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대상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
2. 지원자금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3. 금융한도 및 용자조건 : 별표 4와 같다.
4. 자금지원 신청기간

가. 시설자금

- (1) 신규입주기업 지원 :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이내. 다만, 단지조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장 등의 건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내, 이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신규입주기업 이외의 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3) 입주기업체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업체의 자금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나. 운전자금 :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시

#### 5. 지원절차

가. 대출결정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기관으로 한다.

나. 담보제공

(1) 감정가액의 100%를 인정할 수 있다.

(2)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후취담보 제공시까지 신용보증서 및 별지 3의 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국 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라. 지원자금의 사후관리

대출취급기관은 지원대상 시설의 기성고 확인 등을 통하여 대출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별표 4 】 금융한도 및 용자조건

구 분	금 용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까지)	년 4.58% (변동가능)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까지)	년 4.58% (변동가능)	4년 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합 계	25억원 이내		

1)금리는 산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

2)상환방법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6개월 균등상환

3)대출취급기관에 대한 대여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연 1.0%를 차감한 이율로 한다.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① 산자부장관은 농공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원대상 :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입주하는 대기업

2. 지원자금 :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3. 금융한도 및 용자조건 : 별표 4와 같다.

4. 자금지원 신청기간

가. 시설자금

(1) 신규입주기업 지원 :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다만, 단지조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장 등의 건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이 경우 시장·군수가 인정하여야 한다.

(2) 신규입주기업 이외의 지원 :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3) 입주기업체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업체의 자금지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

나. 운전자금 :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시

5. 지원절차

가. 대출결정기관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 검토기관으로 한다.

나. 담보제공

(1) 감정가액의 100%를 인정할 수 있다.

(2)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 시설에 대한 후취담보 제공시까지 신용보증서 및 별지 3의 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중담보 취득 등의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대출취급기관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은행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외국 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한다)

<의안번호 제2007 - 42호>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I.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년 11월 6일
- 나. 제출자 : 거창군수(상하수도사업소)
- 다. 회부일자 : 2007년 11월 6일

## II. 제안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액의 가산금율을 인하하여 형평성을 맞추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III. 주요내용

- 조례명칭을 띄어쓰기함(안 제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 상수도사용요금 체납시 가산금율 인하함(안 제34조)
  - 100분의 5 ⇒ 100분의 3
- 부적합한 용어를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안 제1조·제14조제3항·제19조·제25조제3항·제30조 본문·제34조·42조제1항)
  - 의하여 ⇒ 따라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날로부터 ⇒ 날부터
- 기타 ⇒ 그 밖에 (안 제1조 · 제6조제5항제3호 · 제19조 제9호 · 제30조제3호 · 제39조제4항제2호 · 제42조 제1항제12호 · 제45조 · 제47조제2항)
- 법령명에 낫표(「」)사용 (안 제1조 · 제39조제1항 · 제46조)

####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다. 그 밖에

- 신 · 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2007. 9. 6. ~ 9. 27.) : 의견 없음

#### V. 검토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2005. 12. 31.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세 체납시 가산금을 인하여 따른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가산금율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조정하고, 조례내용 중 부적합한 용어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명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비용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u>거창군의 관할구역 중 거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 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u></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신청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분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u>기타</u> 군수가 분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생략)            ③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u></p> <p>제1조(목적) -----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            -----<u>그 밖에</u>            -----            -----.</p> <p>제3조(급수구역) -----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            -----            -----            -----            -----.</p> <p>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p> <p>제14조(시설분담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u>각 호의 어느 하나</u>-----            -----            1. ~ 3. (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9조(신고) 상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8. (생 략)</p> <p>9. <u>기타</u>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p>	<p>제19조(신고)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                      1. ~ 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p>
<p>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p> <p>① ~ ② (생 략)</p> <p>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p> <p>1. ~ 5. (생 략)</p>	<p>제25조(급수중지와 폐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 수량은 상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p> <p>1. ~ 2. (생 략)</p> <p>3. <u>기타</u> 인정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p>	<p>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p>
<p>제34조(가산금) 상수도사용자등이 상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u>날로부터</u> 체납액의 <u>100분의 5</u>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p>	<p>제34조(가산금) -----                      -----                      -----                      -----                      ----- <u>날부터</u> -----  <u>100분의 3</u>-----                      ---.</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중수도 설치대상 및 확인) ① <u>수도법시행령</u>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물을 1일 1,0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시설중 병원, 수영장, 관광휴양시설을 말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생략)</p> <p>1. (생략)</p> <p>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3. ~ 4. (생략)</p> <p>⑤ (생략)</p>	<p>제39조(중수도 설치대상 및 확인) ① 「<u>수도법 시행령</u>」-----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그 밖에</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 <u>군수</u>는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p> <p>1. ~ 11. (생략)</p> <p>12. <u>기타</u>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p> <p>② (생략)</p>	<p>제42조(급수정지 처분)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u>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그 밖에</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5조(과태료) 사기, <u>기타</u>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를 면탈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탈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 처분에 과한다.</p>	<p>제45조(과태료) --- <u>그 밖에</u> ----- ----- ----- ----- ----- -----.</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6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u>수도법</u> 제 53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p>	<p>제46조(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산출기준) 「<u>수도법</u>」 ----- ----- ----- -----.</p>
<p>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생략)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u>기타</u>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하게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47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u>그</u> <u>밖에</u> ----- ----- ----- --. ③ (현행과 같음)</p>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

제27조(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12.31]